

##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

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)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 이내
신청인	상호(사업장 명칭)	등록(허가)일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: )	
신청내용	사업장 소재지	(전화번호: )	
	자동차정비업종		
	①기술인력 확보현황		
	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 · 도지사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·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검사 시설·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. 검사업무규정(시설·장비·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)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)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작성요령

1.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,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

